

V

사회적협동조합

1. 개요
2. 설립
3. 조합원
4. 기관
5. 사업
6. 회계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8. 등기
9.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1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1.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01 개요

개념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함(법 제2조제3호)

특징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주요특징
법인격	비영리법인
설립인가신청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인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해당 시), 이사회
조합원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 포함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의결권·선거권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임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사업	법 제93조제1항의 주사업 40% 이상 수행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 가능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필수 포함
사업의 이용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사업의 이용 가능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
배당	잉여금 배당 불가
감독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관련 규정 존재

설립현황

- ‘19.12월말 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은 1,710개가 설립인가되어 전체 협동조합(16,895개) 중 약 10.2%를 차지
- ※ 자세한 협동조합 설립현황은 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

02 설립

가 설립인가신청 절차

법 제85조(설립인가 등)

-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번	절차	비고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인가 신청	발기인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7	설립인가증 발급	인가신청 받은 날로부터 후 60일 이내, 소관부처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1.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법 제85조제1항)
 -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법 제91조, 제20조)
-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를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 창립총회 개최
 - 설립동의자의 개인정보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업무 진행,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식별,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등을 위해 활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3조)
 -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설립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주민등록번호 파기

2. 정관 작성

- “정관”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 법 제86조(정관)제1항의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서 발기인 포함

4. 창립총회 공고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
 - 일간지 게재, 벽보 게시,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정관에 사이트 주소 명시해야 함)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소관부처는 공고기간 7일 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
 -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총회 소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 창립총회 공고사항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 조합원의 자격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5. 창립총회 개최

법 제85조(설립인가 등)

제85조(설립인가 등)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창립총회 필수 의결 사항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이사장은 이사 선출 후, 이사 중에서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주사무소 세부 소재지 확인 포함)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 작성

6. 설립인가 신청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16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신청

- 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항에 따라 주사업 관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 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항 및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탁)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권한을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 소관 중앙행정기관 판단기준

- 원칙적으로 정관상 주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함

- 주사업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이 되며

- 주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소관으로 함

- 다만 정관에는 다른 사업으로 분류해놓았더라도 주사업 적용법령 및 사업목적에 고려하면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동일사업으로 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판단

※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주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이를 위한 사업으로 ①출판 ②홍보 ③미용 사업을 계획한 경우, 이 세 가지 모두 하나의 주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주사업 목적인 반려동물 인식개선과 관계되는 법령을 관할하는 부처가 중앙행정기관이 됨

• 주사업유형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판단기준

지역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수입지출예산서상 주사업비 지출이 가장 큰 사업의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업계획서상 서비스 제공 비율이 가장 높은 주사업의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고용인원 또는 인건비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주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위탁사업형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혼합형

- ① 선택한 주사업 유형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의 주사업 중
 - ② 수입지출예산서상 주사업비 지출이 가장 큰 사업의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 ※ (예시) 지역사업형 30%, 취약계층고용형 20%의 혼합형으로 인가신청한 경우, 지역사업형으로 수행하는 주사업 가운데 지출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담당

• 설립인가신청 서류 접수 시 유의사항

-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청 내용을 즉시 등록

- 행정기관의 장은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되며,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조)

·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와 구두협의 후 공문으로 이송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인에게 반려할 수 없음

• 설립인가신청 서류 보완요청 시 유의사항

법 제85조 제4항, 제5항(설립인가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85조(설립인가 등)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① 법 제85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법 제85조제5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 지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인가업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음(법 116조제3항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은 인가신청서 접수 즉시,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첨부하여 등록*

*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청서류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검토 요청됨(별도 공문시행 불필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등록

*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검토보고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결과가 통보됨(별도 공문시행 불필요)

법 제85조(설립인가 등) 및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85조(설립인가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16조의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발급
 -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85조제4항)
 -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60일 또는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봄(법 제85조제5항)
- 처리기간의 계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시행령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②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아래의 사항은 민원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함
 - 설립인가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되지 않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설립인가 신청 반려가 가능한 사항(법 제85조제3항)
 -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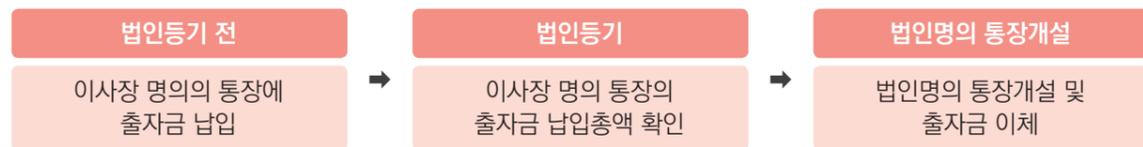
- 설립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8.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법 제87조)

9. 출자금 납입

- 이사장이 발기인대표로부터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법 제87조제2항)
 -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며, 등기 시에는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 제출(설립인가 신청서상 출자금 납입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여야 함)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제출



-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함

10. 설립등기

법 제106조(설립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 “설립인가를 받은 날”이란 설립인가증이 도달한 날을 의미(법 제109조)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법 제112조제1항제5호)
 -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3항제1호)

11.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 가능(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하는 날, 기타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등을 의미
 -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원칙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주거하는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인가증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7	자금출자 명세서	
8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9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사업자 등록 신청 요함

참고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〇〇〇 사회적협동조합(가칭) 설립발기인회」에서 추진하는 〇〇〇 사회적협동조합(가칭)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 및 운영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설립인가 등 설립업무 진행
-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 식별
-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조합원 탈퇴시 파기하며, 출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내부규정에 의해 최대 2년간 보존할 수 있음
- 단, 주민등록번호는 설립신청 등 설립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파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정보는 설립인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유로 필요시 아래의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가. 정보제공 기관
- 설립인가 관련 : 중앙행정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법인등기 관련 :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관련 :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나. 정보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각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〇〇〇 사회적협동조합(가칭) 설립발기인 대표 귀하

나 설립인가신청 서류

시행규칙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해당 연도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연번	인가신청서류	비고
1	설립인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2	정관 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5	임원명부(임원약력 포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 서식 없음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11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서식 없음

1. 설립인가신청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제출
 - 혼합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형을 모두 표기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신청인이 되어야 하므로 발기인 또는 설립동의자 중 1인이 설립신고인이 됨
 - ※ 행정사는 설립신고인이 될 수 없음

2. 정관

법 제86조(정관)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정관”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제출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예시’를 참고하되, 해당 협동조합 고유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 법 제8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나, 그 외의 사항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법 제17조 준용)
 - 주요 확인사항
 - 법 제86호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명칭 등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
-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사업내용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관계없이 너무 많은 사업을 열거하고 있지 않아야 함
- 5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하여야 함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음
 -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주요 확인사항
 - 필수 포함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창립 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공고방법은 정관에 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관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였는지 확인
 - 공고문을 게재한 신문, 벽보 게시 사진 등 공고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했는지 확인

4. 창립총회 의사록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핵심 내용에 대한 개조식 서술도 가능
- 총회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 의장 및 기명날인자 선출과정, 필수의결사항,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법 제30조 준용)
-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 의장과 이사가 다른 경우 (임시)의장과 이사장 모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자 3인을 선출하지 않았을 경우, 설립동의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선출된 임원이 모두 설립동의자인 경우)
- 공증을 위해 인감도장으로 기명날인할 것을 권장

• 주요 확인사항

-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등기 시 편의를 위하여 주사무소 주소를 창립총회 의사록에 기재할 것을 권장
- 임원의 선출방법이 법 제34조(임원) 및 정관에 합치하여야 함
 - 이사 먼저 선임 후, 이사 중에 이사장 선출
 - 정관에 기재된 임원의 대상 및 자격에 맞게 선출하여야 함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을 위하여 원본 2부 작성(공증인법 제63조 및 제66조의2)
- 공증인사무소에 1부 제출, 등기소에 1부 제출
- 등기소에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이 원본을 소장하기 위하여 원본을 3부 작성하는 것을 권장
 - ※ 공증 준비서류(공증사무소마다 첨부서류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1. 창립총회의사록 원본 2부(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필요)
2. 정관
3. 이사장의 진술서
4. 조합원 명부
5. 조합원의 인증 관련 위임장
6. 조합원의 인감증명

5. 임원명부

• 서식

- '임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약력 포함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재

• 주요 확인사항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함
- 이사 및 감사의 수가 정관에 부합하여야 함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총회 의사록에서 확인)
- 임원은 법 제3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함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9호)의 서식 활용

6. 사업계획서

•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해당 주사업 유형에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기재하며, 혼합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형에 모두 기재
- 해당연도의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 주요 확인사항

- 정관에 규정한 사업의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함
- 법 제45조에 규정된 필수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7. 수입지출예산서

-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수입·지출 예산서(시행규칙 제20호 서식)'
- 주요 확인사항
 -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출자 1좌당 금액, 개인별 출자좌수, 총 출자금액 기재
- 주요 확인사항
 - 출자 1좌의 금액이 균일하여야 함
 - 모든 조합원이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함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하면 안 됨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서식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고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발기인으로, 발기인이 아닌 자로서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설립동의자로 구분하여 기재
- 주요 확인사항

시행령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

- 설립동의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함

※ 설립동의자 유형

유형	내용
생산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
소비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직원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자
자원봉사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후원자	조합에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총회의사록 작성방법 준용
- 주요 확인사항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반드시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시행규칙 제14조제2항9호)
 - 법 제101조제1,2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제출(시행규칙 제14조제2항9호)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주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제출
 - 그 밖의 입증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
- 주요 확인사항
 - 각 주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기재 시 시행규칙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판단기준)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호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명시
 - ※ (예)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지역특산물·자연자원 활용사업"에 해당
 - 사회적협동조합이 제출한 주사업이 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을 통해 법에서 정한 주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참고사항

- 설립인가 신청 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원본대조필 도장 날인)하여 제출
-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사업내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일관성이 없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
- 잘못된 작성례
 - 정관에 없는 사업을 사업계획서나 수입지출예산서에 작성
 -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상의 사업명칭을 서로 다르게 작성
 - 사업계획서 상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에는 있으나, 수입지출예산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기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법령

시행령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따른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 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 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 의자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 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 각 호 중 "설립동 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및 관리감독	소관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최소 조합원수	5인	500인
최저 출자금	제한 없음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	제한 없음	5만원
1인당 최고출자금	출자금납입총액의 30% 이내	출자금납입총액의 10% 이내
비조합원 이용	제한 없음(예외 있음)	총 공급고의 50% 이내
이용공급고 산정	기준 없음	매출액 또는 이용인원

설립동 의자 및 출자금

- 의료기관 1개소 당 설립동 의자는 500인 이상일 것
- 설립동 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일 것
 -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 의자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 그 2인 이상의 설립동 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로 하여야 함
-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 자산의 50% 이상일 것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이 50% 미만일 수 있음

의료기관 추가개설

-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군·구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설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추가로 개설 가능

라 성립 및 설립무효

법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준용

-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하므로 조합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성립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만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상법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상법 제186조-193조

-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협동조합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2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협동조합과 조합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약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의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마 정관변경

법 제86조(정관) 및 시행규칙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 법 제86조(정관)**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시행규칙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 발생

-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후 등기 전 사회적협동조합도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정관변경

-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관변경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86조제4항)

- 10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10일 또는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봄(법 제86조제5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인가하고,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가할 필요 없음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증 기재 내용(이사장, 법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소관 부처에 공문으로 변경내용에 대해 통지하면서 설립인가증 재발급 요청 가능

03 조합원

가 자격 및 가입

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제21조(가입) 준용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합원의 자격

- “조합원”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자연인 또는 법인)를 말함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조합원은 임원으로 선임 불가(법 제34조 제1항~제3항 및 제92조)
 -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음
 -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 자격 제한 가능
- ※ (예시)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조합원의 자격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학부모이거나 직원으로 재직할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

조합원의 가입

- (법인) 국내법인, 외국법인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다만,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출자규제관련 법률에 적합해야 함
 -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미성년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나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필요
 -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및 성격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 (예) 소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조합원 등으로 가입 가능

- 다만, 공무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직무를 겸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 필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및 제26조(겸직허가)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공공기관 상임임원 및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및 성격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 (예) 소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조합원 등으로 가입 가능
-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므로 조합원으로 가입 불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나 출자 및 책임

법 제86조(정관) 및 제22조(출자 및 책임) 준용

제86조(정관)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출자

- “출자”란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행위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함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최저·최고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 됨
 - 조합원 1인이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제한을 초과한 출자금은 출자금으로써의 효력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법 제119조제2항제1호)

현물출자

-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 가능
 - 현물출자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정관에 객관적인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방식(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시가 등) 기재 가능
 - 설립등기 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조합 명의로 발급 가능) 첨부

출자금의 납부

- 출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다만 분할 납부를 할 경우, 출자금 분할 납부방법 및 시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분할납부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출자금의 사용

- 출자금은 사업운영 등을 위해 사용 가능하며, 개인명의로 사용 금지
 -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과 가능) (법 제117조제1항)

출자금과 질권

-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인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시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일반기업의 자본과는 다른 성격을 지님
 - ※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현금화하여 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출자금과 채권

- 사회적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권(債權)과 상계하지 못함
 -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할 설립동의자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출자금 납입을 갈음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기초가 되는 자본금(출자금 납입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

출자금과 조합원의 책임

-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하므로 조합원에게 출자금 이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다 의결권 및 선거권

법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준용

-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소유,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2항제3호)
 - 법인조합원의 경우 대표 또는 법인이 지정한 직무수행대리자가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함

대리인의 선임

-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
 -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을 사회적협동조합에 제출
- 대리인의 범위는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함

라 탈퇴

법 제24조(탈퇴) 준용

-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 <2017. 8. 9.>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탈퇴

- “탈퇴”란 사회적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의무 상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음

당연탈퇴 사유

-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사유로 탈퇴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사망한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당연탈퇴

조합원 지위·출자금 양도에 대한 총회의 의결

- ‘조합원의 지위 및 출자금의 양도(법 제24조)’는 총회에서 의결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는 조합원으로서 갖고 있던 권리(의결권 및 선거권, 사업의 이용 등)와 의무(선거운동의 제한, 겸직금지 등)를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

- 조합원의 “출자금의 양도”는 탈퇴 조합원이 갖고 있는 출자금을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출자금의 양수인은 양수한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

마 제명

법 제25조(제명) 준용

-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명”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

제명사유

-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출자, 경비의 납입 등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명절차

-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 찬성의 의결로 제명
 -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함

바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법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출자금환급청구권

- 탈퇴 및 제명 조합원은 탈퇴 및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 청구 가능
 - ※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서 조합원에게 배당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각 조합원의 “지분” 개념으로 표현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조합원에게 배당이 금지된 구조이므로 각 조합원의 지분 개념은 성립할 수 없고, “출자금”으로 표현
- 출자금환급청구권은 청구권 발생시점(탈퇴 및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환급정지

-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음
 - “채무”란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 선급금, 외상판매금 등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의미

사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법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및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손실액 납입 청구

-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 청구 가능
 - 예시) 탈퇴한 조합원이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에 대한 납입 청구 가능

※ 참고사항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중 조합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법에서 해산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임(법 제102조)
 - 다만, 법 제14조는 법에 규정한 사항 외는 민법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에 조합원이 없게 된 경우 해산사유이며
 - 조합원 1인당 30% 초과를 금지하는 출자금 제한 규정(법 제2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04 기관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

총회

법 제28조(총회) 준용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란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수기관 및 최고의사결정기관을 의미
 -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됨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 (정기총회)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을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 (임시총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 통지
-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도 가능함
 - 대리인 자격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에 한정됨
 - ※ 다만, 총회 의결방법으로 서면결의는 불가

총회의 의결사항

법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준용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 의결정족수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1. 정관의 변경 2.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17조제2항제3호)

대의원총회

법 제31조(대의원총회) 준용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 구성 가능(시행령 제9조)
 - “대의원총회”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
 -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정할 수 있음)
-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음
-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음
-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
 -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됨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 통지

이사회

법 제32조(이사회), 제33조(이사회 의결사항) 준용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 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이사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결사항
 -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등
-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 정관에 법 제33조의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결정할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명시

나 임원

임원

법 제34조(임원) 일부 준용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으로 선출 가능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

-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으로 선출 불가능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대한 준용규정(제92조)에서 법인 조합원이 임원일 경우를 규정하는 법 제34조제4항을 준용하지 않음
- 감사는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감사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둔 법 제34조제5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감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함

임원의 임기

법 제35조(임원의 임기) 준용

-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함
- 이사장은 2번만 연임이 가능하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
 -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최초 개시되는 임기(4년의 범위 내)를 제외하고 추가로 두 번 더 연임이 가능하다는 의미*
 - * 임원의 임기가 4년, 2차에 걸쳐 연임하는 경우 한 번에 최대 12년까지 재임 가능
- 결원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임임원이 신규임원 선출 전까지 임원의 직무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
-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
 - 다만, 임기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결원에 따른 임원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기본법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준용

-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 (기능)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선거 관련 분쟁 조정, 선거운동방법 위반여부의 심사, 위반 사례 발생에 대한 조치 등
-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위촉기간, 자격상실 규정
- (운영)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방법 및 역할 등

임원 등의 결격사유

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준용

-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 ‘e하나로민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 사무를 통해 조회
 - ‘결격사유 유무’는 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에 의뢰하는 것도 가능
-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국내체류기간에 대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경찰청으로 외국인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기재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조회 의뢰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

- 임원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
-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음

임원의 의무와 책임

법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준용

-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임원의 의무
 - 임원은 법령 및 총회·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 수행해야 함
- 임원의 책임
 -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
 -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 임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임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봄

임원의 해임

법 제40조(임원의 해임) 준용

-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법령 및 정관의 위반 시 해임

- 해임절차
 - 조합원은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 요구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 결의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법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준용

-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이사장) 사회적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 집행
- (이사)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 대행
 - 이사장의 사고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이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음

감사의 직무 및 감사의 대표권

법 제42조(감사의 직무) 및 제43조(감사의 대표권) 일부 준용

-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 “감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감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수기관으로서,
 - 회계지식을 갖추고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 감사의 직무
 -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 예고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 대조·확인 가능
 - 이사장 및 이사가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감사의 대표권
 - 사회적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경우 감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대표함

다 임직원의 겸직금지

임원의 겸직 관련 법령

- 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시행령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92조,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수가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시행령 제20조제1항)
 - 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여도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시행령 제10조)

-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10조, 제20조)

구분	내용	비고
1	임원총수의 1/3 이하	
2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직원협동조합)	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임원총수의 1/3 초과 겸직 가능
3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임원총수의 1/3 초과 겸직 가능

※ 시행령 제10조 3호(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는 해당 규정에 따른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용 불가

- 겸직금지 사항
 - 이사장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포함)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참고 |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결격사유 조회 방법

-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 ‘e하나로민원’을 통해 대상자의 결격사유 확인 가능
 - ‘결격사유 유무 조회’ 사무에 대한 열람권한을 부여받은 후, 열람하고자 하는 결격사유 대상자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한 뒤 조회 가능
 - ‘결격사유 유무 조회’로는 결격사유의 해당여부만 조회가능하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로 의뢰하여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확인
- ② (공문으로 확인하는 경우)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음)’를 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요청
 - 등록기준지 최소단위구역이 ‘읍·면’인 경우 읍·면장에게, ‘동’인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에게 의뢰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 조회

-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신원조회는 불가하나, 국내체류기간에 대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지자체가 속한 지방경찰청으로 범죄경력조회 의뢰(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기재하여 조회 의뢰)

※ 신원조회 의뢰 공문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대상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경력조회 의뢰 공문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을 위해 붙임과 같이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선거운동의 제한

법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준용

-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a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의 표시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 선거운동 제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조합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적용

선거운동의 제한 사항

- 금품 등의 제공금지 등
 -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
 -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금품 등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 협동조합기본법 상,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17조제3항)
-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기본법 제37조 제2항과 동일 취지의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은 처벌 대상 행위가 법으로 예측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8헌가12)을 받았음
- ※ 따라서 정관에는 동일 취지의 조항이나 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2항 규정을 참고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
-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음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전화·팩스·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법 제3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17조제3항)

05 사업

가 주사업

법 제93조(사업)

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함

- 정관상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사회적협동조합 고유의 설립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재
- 정관상 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맞지 않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

사회적협동조합은 법 제9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주 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함

주사업 유형

구분	유형	내용
1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 지역사업형

주사업 관련 법령(지역사업형)

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시행령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주사업 관련 법령(지역사업형)

시행규칙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1.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판단방법(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적합한 기준 택일)

-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주사업 관련 법령(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시행령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예술·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시행규칙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①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 :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②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예술·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판단방법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취약계층 고용형

주사업 관련 법령(취약계층고용형)

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시행령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 판단방법(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적합한 기준 택일)

-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위탁사업형

주사업 관련 법령(위탁사업형)

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시행규칙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

업무협약 등으로 위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판단방법

수입·지출 예산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입이 전체 사업 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기타 공익증진형

주사업 관련 법령(기타 공익증진형)

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시행규칙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위의 네 가지 유형 이외의 사업으로서 현저히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

※ 판단방법(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적합한 기준 택일)

-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주사업 관련 법령(혼합형)

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시행규칙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사업 수행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사업 수행

※ 판단방법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참고 | 취약계층

정의

-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 ① 가구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입영수증) 등을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 * 단,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에 의한 소득판단은 지역가입자 제외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 19년도 직장가입자보험료율(3.5%)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 ·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 ·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03호, 2020.1.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카.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류)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나 기타사업

법 제45조(사업) 준용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법 제45조의 사업을 반드시 필수사업으로 포함하여야 하므로 정관의 기타사업에 반드시 명시 필요

필수 포함 사업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료법」, 「경비업법」 등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구입 불가능, 「의료법」에 따라 안마원 운영 불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한지 우선 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음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종은 ‘참고’에 적시되어 있음

- 협동조합의 장례서비스 제공대상이 조합원으로 한정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협동조합의 조합원대상 상조사업 운영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해당여부

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임

나. ○○○연합회 선불식 할부거래회사 설립규약 및 ○○○협동조합연합회 상포계 규약 등에 따르면 (주)○○○는 회원조합 조합원에게 상포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귀 연합회가 100%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 설립된 회사이며, (주)○○○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회원조합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따라서 현행 ○○○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선불식 할부거래회사 설립규약 및 상포계 규약에 의하면 (주)○○○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통계청고시 제2017-13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업	은행 및 저축기관	중앙은행	중앙은행	
			일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용조합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기타 금융 투자업	
		기타 금융업	여신금융업	금융리스업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그 외 기타 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기금 운영업		
			지주회사		
	보험 및 연금업	보험업	생명 보험업	생명 보험업	
			손해 및 보증 보험업	손해 보험업	
				보증 보험업	
			사회보장 보험업	건강 보험업	
		재 보험업	재 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재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연금 및 공제업	개인 공제업	
				사업 공제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증권 중개업
선물 중개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증권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지원 서비스업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손해 사정업		
		보험 대리 및 중개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다 소액대출

법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및 시행령 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법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이하 이 조에서 “소액대출”이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원의 수
2. 출자금 규모
3. 소액대출의 종류

② 소액대출 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④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소액대출”은 조합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 주택자금, 사업운영 자금 등 소액자금 신용대출해 주는 사업
- 사회적협동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2 한도에서 소액대출 가능

소액대출 한도

-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액대출의 한도는 조합원의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함

소액대출 이자율

-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 소액대출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
 -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연 24%)을 넘을 수 없음

소액대출 회계

- 소액대출사업은 주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특별회계 등으로 따로 회계처리

정관 기재 사항

- 대출자격, 1인당 대출한도, 대출이자율·연체이자율, 대출위험관리,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
 - 대출을 받고 사회적협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무분별한 대출신청 등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출자격 명시
 - 소액대출 사업운영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충당금 적립의무가 필요하며 대출위험 관리에 관한 내용 명시
-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액대출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2항제5호)

라 상호부조

상호부조 관련 법령

법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3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이하 이 조에서 “상호부조”라 한다)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와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상호부조”란 조합원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 조합원이 낸 회비로 운영하여야 하며, 출자금 또는 차입금 등을 기금으로 운영해서는 안 됨
- 소액대출은 대출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반면, 상호부조는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음

상호부조 정관 기재사항

-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적립금 운용) 적립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으나 적립된 기금이 주식, 회사채, 기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지 않도록 함
 - (대손위험관리) 상호부조 사업의 대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관에 적절한 대손위험 관리방안이 있는지 확인
 - (제3자 계약금지) 상호부조 계약은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기관이나 보험기관 등 제3의 판매조직을 통한 계약 불가

상호부조 회계

-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특별회계 등으로 따로 회계처리
- 사회적협동조합이 상호부조의 총사업 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2항제5호)

마 사업의 이용

사업의 이용 관련 법령

법 제95조(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95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

- 사업의 이용이란 조합원이 소비자, 사업자, 직원의 지위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
 -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음
 -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
 -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 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 적용 -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간주

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시행령 제26조(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 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6조(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촉진

-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협동조합과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체결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9.3.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8.7.24.)

- 이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급한 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계약체결 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용역 입찰 시 신인도 가점

근거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7.10.)	신인도 평가기준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2.0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17.12.)	신인도	기타	여성기업 등	1.0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통보

- 우선구매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www.sepp.or.kr - 우선구매실적/공공조달 - 계획/실적 등록)
-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협동조합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미제출 기관은 공고 시 별도 공개(예정)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실적 관련 평가

평가구분	평가지표	목표비율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	지자체 별 상이
공공기관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 및 구매액 향상도	0.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	1% (SE+예비+사협)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관련 정보

- 권역별 공공구매 지원센터: 1566-5365
 - 관내 사회적경제상품 발굴 및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매칭, 제품 구매 희망 시 관련 제품 추천 등
- 사회적경제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 e-store36.5+(www.sepp.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 참고(매년 초, 공문 발송 또는 www.coop.go.kr - 자료실)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적협동조합 지점에서 구매한 제품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3항에 따라 지사무소(지점)을 둘 수 있으며, 지점과의 거래도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됩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 본점과 지점의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시어 지점 관련 여부를 확인·증빙하여야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이 생산한 제품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개인 및 법인 등 조합원이 생산한 제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구매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은 법적 의무구매비율이 있나요? 구매계획 수립 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요?

A.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평가 중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실적 지표, 타 제품의 의무구매비율,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에 포함되는 구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공공기관이 예산을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직접 구매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구매한 경우(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이 용역 수행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한 경우,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이 해당 물품의 설치 등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용역(서비스)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간접구매의 경우 용역(물품)업체와 사회적협동조합 용역(물품) 구매계약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합니다.

Q. 우리 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가기관(dBrain), 자치단체(e-호조), 교육청(에듀파인), 지방의료원(K-HOPES)은 각 재정시스템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관은 e-store36.5+(www.sepp.or.kr)사이트 내 '공공조달 정보'-'우선구매 실적입력'에 게시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품정보 관련 DB를 다운받아 사회적기업 제품 거래내역을 집계할 수 있도록 개별 재정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참고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관련 정보 취득방법

제품정보 확인

- (사회적협동조합 찾기)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 협동조합 현황 → 협동조합 설립현황 엑셀 다운로드
 - 인가 시 입력한 업종, 품목, 주요사업 등 상품정보 확인가능
 - *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e-store36.5+ 접속(www.sepp.or.kr) → 우선구매실적/공공조달 → 우선구매 공지사항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현황
- e-store36.5+를 활용한 제품 찾기
 - e-store36.5+ 화면 중앙 상단의 '검색'창을 활용하여 원하는 상품 검색



- 중분류 또는 소분류 카테고리 메뉴로 상품 및 상세정보(기업 인증유형, 상품유형, 지역, 제품/서비스 카테고리 등) 검색 가능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내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품 확인 가능

06 회계

가 회계

회계연도

법 제47조(회계연도 등)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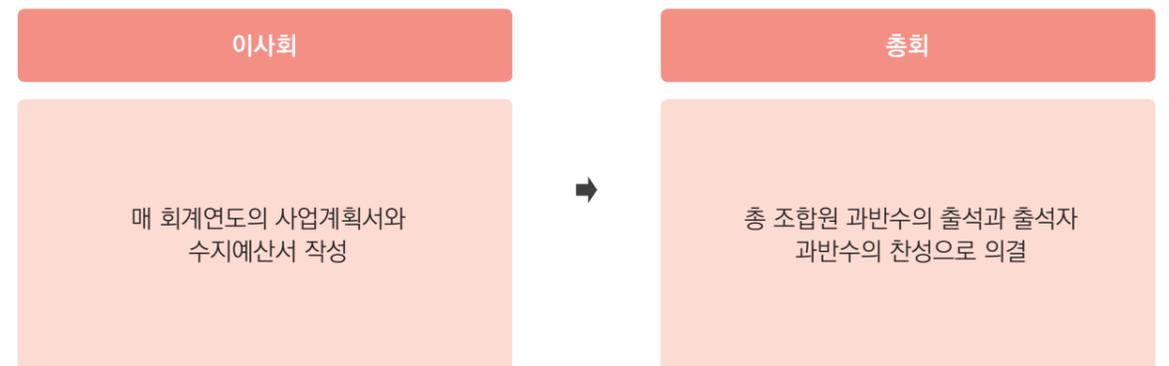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분은 정관으로 정한다.

- “회계”란 재산의 증감·변동·수입과 지출·처리 등 재무에 대한 처리를 말하며, “회계연도”란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는 기간으로서 통상 1년을 1회계연도라고 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부분은 정관으로 정함
 - (일반회계) 사회적협동조합의 일반적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 계리
 -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운영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사용 가능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법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준용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V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공개

법 제96조(운영의 공개)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 ·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운영의 공개 사항

- ①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② 총회 · 이사회의 의사록
- ③ 조합원 명부
- ④ 회계장부
- ⑤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적협동조합은 운영의 공개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청구 가능

-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시, 운영의 공개 사항 중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1호)

- 예외적으로 ① 정보 공개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② 정보 공개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③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공개 가능함(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3항제2,3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법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

-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 사용 금지

※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

구분	내용
잉여금	순재산액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회계상 당기순이익
잉여금의 종류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
	이익잉여금 : 영업활동 등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
순재산	총자산으로부터 총부채를 뺀 것으로,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 자기자본(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합산하여 산정)이라고도 함
법정자본금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유지하여야 할 최소한의 자본으로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 총액을 법정자본금으로 간주

• “임의적립금”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가능

- 사업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가능

손실금의 보전

법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손실금(당기손실금)”이란 총수익이 총비용 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금액

•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당기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잉여금의 배당 금지

법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음

부과금의 면제

법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부과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함(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 특정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 면제

- 법 제99조의 조항에 근거하여 모든 부과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과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면제 가능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부담금 부과요건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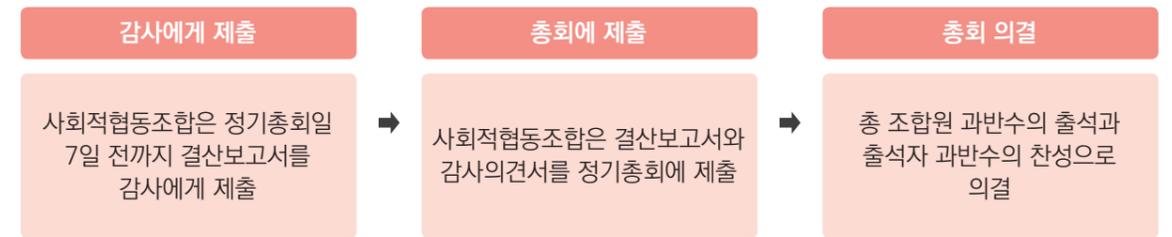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결산보고서의 승인

법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준용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결산보고서의 종류
 - 사업결산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
- 결산보고서 승인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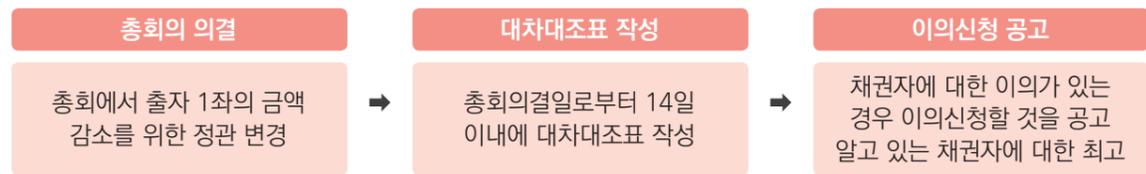


출자감소의 의결

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준용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총회의 의결
 -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
 - 정관의 변경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대차대조표의 작성
 - 총회에서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함
- 이의신청 공고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
 - 대차대조표 작성기간(14일) 동안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에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
 -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최고의 효력발생 시기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민법 제111조제1항)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준용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봄
-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법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준용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조합원의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로 설정하는 등)으로 하여서는 안 됨

나 경영공시

경영공시 관련 법령

법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9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①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별지 제24호의2서식(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의 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경영공시 대상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
- 연도 중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경영공시 해야 함

경영공시 시기

-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단의 경영공시 자료를 공시(법 제96조의2 제1항 각호)

경영공시 자료 및 게재방법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게재하며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을 게재 • 정관에 발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삭제하고 게재
사업결산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직전 회계연도 '수입·지출예산서' 상의 예산과 '사업결산 보고서' 상의 항목 및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 연도 중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없음

구분	내용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창립총회 포함
사업결과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기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해당연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 기재 ※ 연도 중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없음

경영공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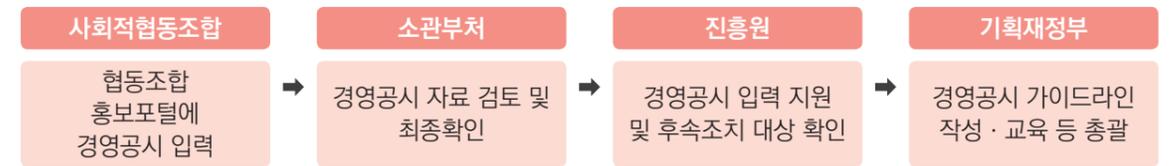
-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협동조합 홍보포털)에 공시(시행령 제 27조)

경영공시 절차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홍보포털 홈페이지에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등을 등록
 - 정관 등 경영공시 자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핸드폰 연락처, 주소 등)가 포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중앙행정기관
 -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현황을 파악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
 - 소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등록한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등 경영공시 자료의 첨부 여부 확인
 - 경영공시 첨부자료와 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의 일치여부 확인
 - 경영공시 자료 검토 후 미비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통보하여 보완
 - 소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의무(공시기한, 허위사실 게재 등) 준수 여부, 주사업 수행(전체 사업의 40% 이상) 여부 등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감독, 시정명령, 과태료 및 벌칙 등 조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간지원기관
 - 경영공시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시 이행을 위한 결산·총회 개최 관련 법인 운영 실무 교육 및 경영공시 입력 지원

- 공시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는 후속조치 검토 필요 대상을 기획재정부에 전달

- 기획재정부
 -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교육 등 경영공시 제도 총괄
 - 경영공시 시스템 개선·관리 및 제도 개선



-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 경영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경영공시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3항)
 - ※ 자세한 사항은 「경영공시 가이드라인」을 참고

참고 1 | 회계기준

총칙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함
	기록보존기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 다만, 전표 등은 5년간 보존
	회계처리원칙	모든 회계처리는 계정과목에 의하여야 하며,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
	전결	경상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규정 제정 가능
예산	예산총계주의	조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계리
	예산편성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에서 편성
	예산의 구분	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의 변경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경 등 예산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 지출 가능. 다만,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을 넘을 수 없음
	예비비 사용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침
결산	결산서의 작성	결산은 예산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총회 제출 전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함
	계정이월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말 각 계정잔액에 대한 실사를 필하고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을 마감하여 각 계정 잔액을 차기년도로 이월

※ '중소기업 회계기준' 일부 준용

수입과 지출	수입금 징수	수입은 출자금, 회비 등으로서, 수지예산서에 계상된 바에 의함
	지출의 절차	모든 지출은 수지예산서의 사업별 및 계정과목별로 지출 함을 원칙으로 함
장부	장부의 종류	주요부(전표, 총계정 원장), 보조부(각 계정 보조부)
	기장원칙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
	전표의 작성	전표는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전표에는 영수증, 청구서, 견적서, 수입 및 지출 결의서 등 증빙서류 첨부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1호와 제158조제2항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전표의 정리	전표는 매월 분을 취합하여 이사장이 날인

출자 및 자본	자본의 구분	자본은 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출자금	출자금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구분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대상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자산으로 하며, 출자 시에 출자의 목적물 전부를 일시에 조합에 인도하여야 함. 현물에 대한 가격의 결정에는 전문기관의 인정이나 가격표 또는 공정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
	자본잉여금	조합원과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차익의 포함 자산재평가차익은 결손에 보존하거나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외에는 처분하지 못함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익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이월금 등에 사용

참고 2 | 경영공시 주요 항목별 체크리스트(예)

검토내용	서식	확인사항
(공시 의무) 정관, 규약, 규정	자체 양식	(정관) 공시된 정관의 부처 인가 여부
		(정관, 규약, 규정) 실제 조합에 구비 중인 사본과 동일 여부(날인된 사본 여부)
(공시 의무) 사업결산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정관의 사업명칭을 기준으로 한 구분기장 이행 여부
		작성 내용과 회계원장, 재무제표 등과의 일치 여부
(공시 의무)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상황	별지 제10호 서식	의결기구의 개최 횟수(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포함)
		작성 내용의 실제 의결 여부(날인된 의사록 구비여부)
		의사록의 적법성 여부(공고기간, 성원요건 도달여부)
(공시 의무) 사업결과보고서 (주, 기타사업)	별지 제24호 서식	정관의 사업명칭을 기준으로 한 실적 관리 이행여부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의 인가기준(40%) 충족 여부
(공시 의무) 사업결과보고서 (상호부조, 소액대출)	별지 제25호 서식	상호부조 사업의 주 사업 및 기타사업과 구분기장 여부
		소액대출 사업의 주 사업 및 기타사업과 구분기장 여부
설립인가 요건 충족 여부	해당 없음	설립동의자(조합원) 5인 이상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벌칙 해당 여부	해당 없음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 영위 법정적립금의 적립 여부와 비율 손실의 보전 및 해산 외에 법정적립금 사용 총회 의결사항의 의결 실시 여부
과태료 해당 여부	해당 없음	(사회적협동조합 해당 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사업한도, 이자율, 범위 등을 초과하게 운영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 한 때(경영공시 지연, 부실)

0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가 합병

합병 관련 법령

- 법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 ⑤ 삭제 <2014.1.21.>
-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⑨ 기획재정부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⑪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 인가)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합병의 정의 및 유형,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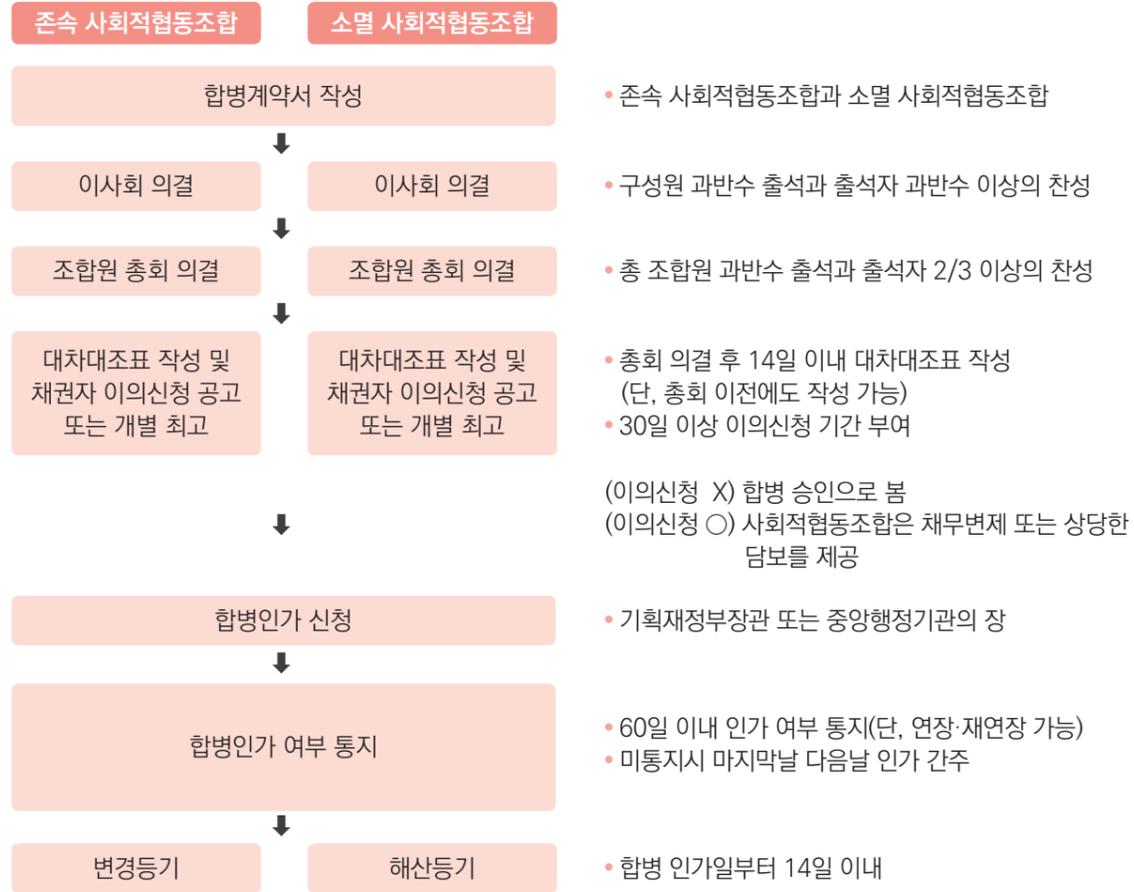
-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청산절차 없이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통합되는 절차
 - “흡수합병”이란 하나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존속하면서, 소멸되는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A+B=A)
 - “신설합병”이란 기존의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멸하면서,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원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A+B=C)
- 합병 후 존속·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법 제101조 제3항)

합병 관련 유의사항

- 협동조합기본법은 상법과 달리 합병 반대 조합원의 지분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합병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사회적협동조합 탈퇴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8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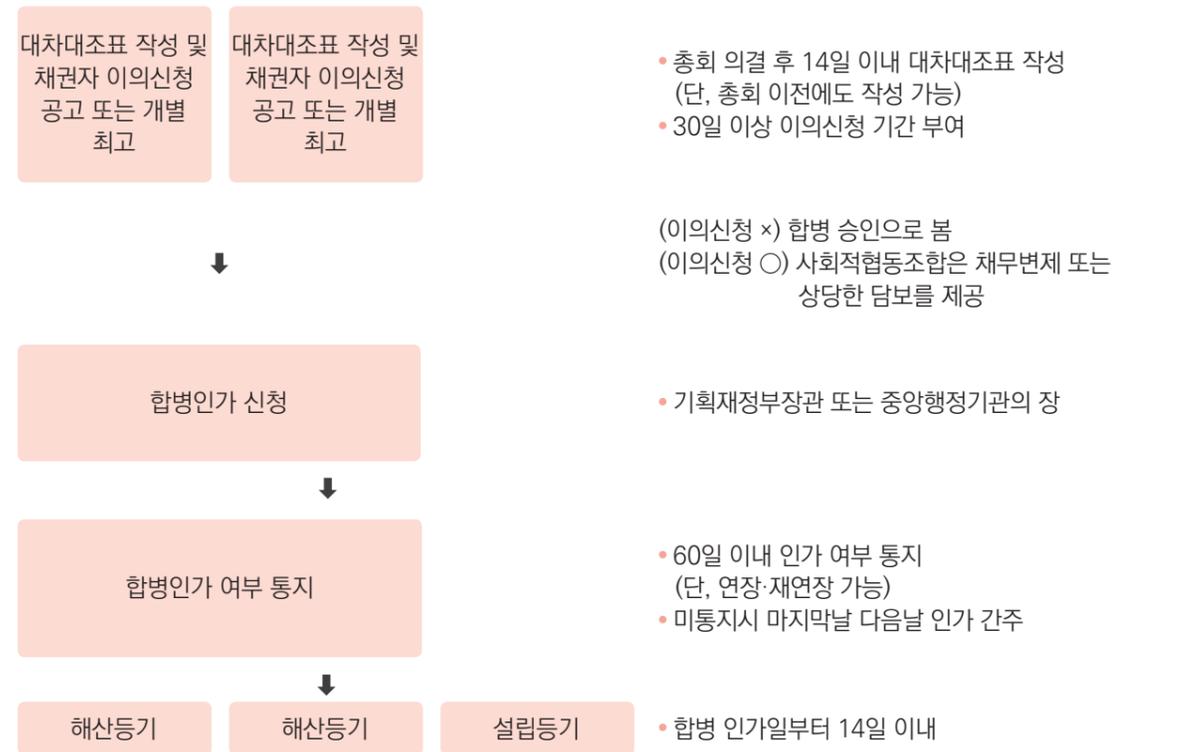
흡수합병

• 흡수합병 절차



신설합병

• 신설합병 절차



합병 세부절차

- ① 합병계약서 작성(법 제101조 제1항)
 - 합병당사자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합병계약의 주된 내용 기재
- ② 이사회 의결(법 제92조, 제33조 제2호)
 - 합병계약서의 승인 및 조합원 총회의 소집과 총회 의안(합병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 ③ 조합원 총회(법 제92조, 제29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 이사장은 각 조합원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법 제101조 제11항, 제53조 및 제54조)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단, 총회 이전에도 작성 가능)
 -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시점은 합병기일(총회 전/후로 작성하였더라도, 합병기일까지의 변동사항 추가 반영 필요)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일정기간(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i) 공고하거나 ii)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
-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단, 이의신청이 없으면 합병 승인으로 봄)

⑤ 인가 신청(법 제101조 제2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병인가 신청

협동조합 유형	신고의 종류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합병인가
소멸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⑥ 합병인가 여부 통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활용) 발급
- 60일 이내에 수리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연장 또는 재연장 기간 포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봄

⑦ 합병등기(법 제107조)

-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

협동조합 유형	등기의 종류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변경등기
소멸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해산등기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⑧ 사업자등록

협동조합 유형	사업자등록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정정
소멸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폐업신고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신청

합병 인가 서류

• 합병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5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
6	합병 후의 수입·지출예산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1부
7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나 타법인 흡수합병

합병 관련 법령

법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시행령 제28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101조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② 법 제101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삭제>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101조제8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타법인 흡수합병의 정의 및 효과

- “타법인 흡수합병”이란 사회적협동조합(A)이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협동조합(B)과 청산절차 없이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A)으로 통합되는 절차
- 합병 후 존속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법 제101조 제3항)

타법인 흡수합병 관련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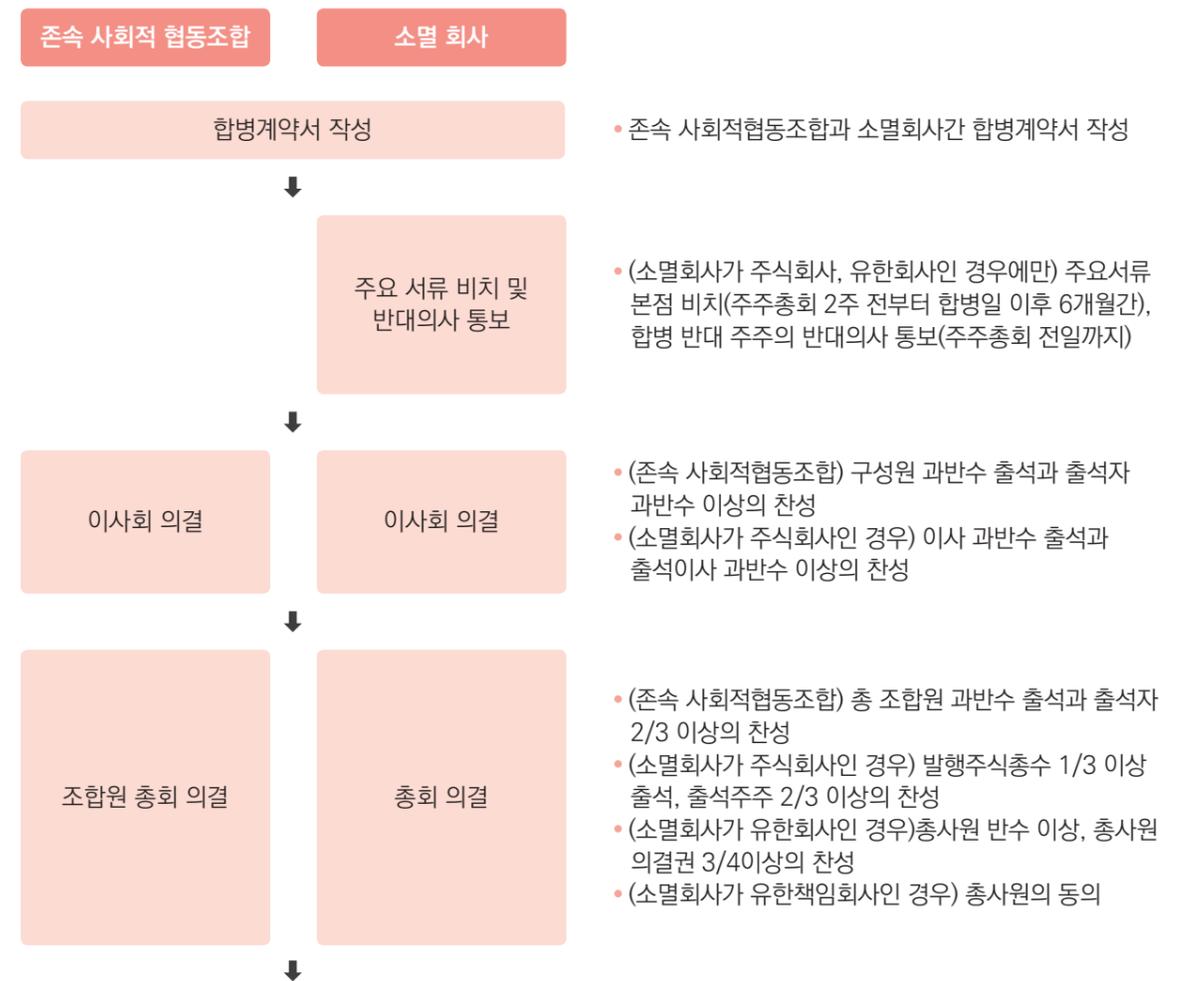
-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법 제101조 제6항)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유한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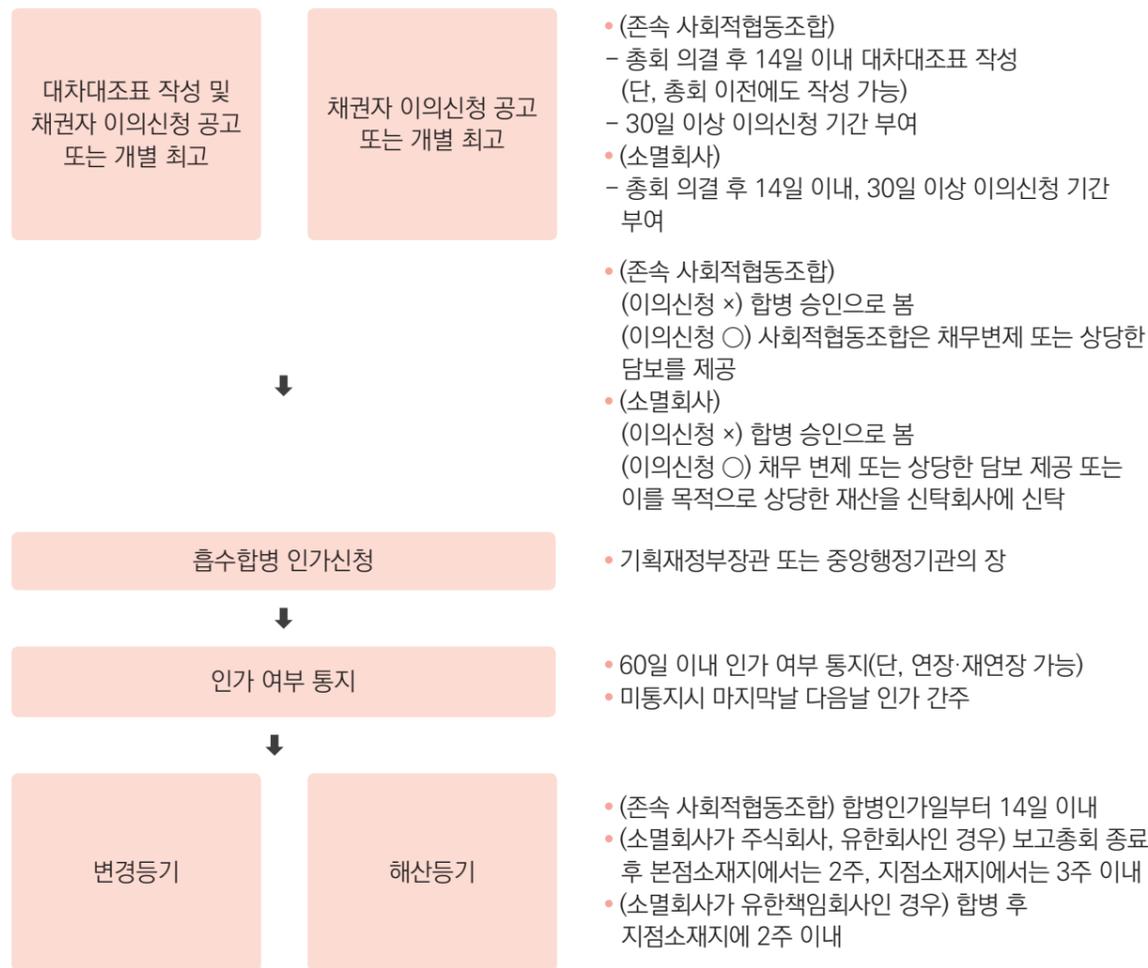
유한책임회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및 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할 수 있음(법 제101조 제7항)

- 타법인 흡수합병 역시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출자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합병으로 존속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멸 타법인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법 제101조제11항 및 제53조, 제54조 및 상법 제232조)
-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 및 감사는 합병계약서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 퇴임(상법 제527조의4제1항)
- 소멸 주식회사의 합병반대 주주는 상법 제530조,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존속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반대 조합원은 탈퇴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89조)

타법인 흡수합병 절차

-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흡수합병 절차





- ① 합병계약서 작성(법 제101조 제1항)
 - 합병으로 존속할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멸할 회사간의 합병계약의 주된 내용 기재
- ② 주요 서류 비치(소멸회사만 해당)
 - (주식회사, 유한회사) 총회 2주 전부터 합병일 이후 6개월까지 합병계약서, 대차대조표 등 주요 서류 본점 비치(상법 제522조의2, 제603조)
- ③ 이사회 의결
 -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1) 합병계약서의 승인 및 2) 조합원 총회의 소집과 총회 의안(합병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법 제92조, 제33조 제2호)
 -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1) 합병계약서의 승인 및 2) 총회의 소집과 총회 의안(합병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상법 제362조)

④ 총회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소멸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조합원 총회	주주총회, 보고총회	사원총회, 보고총회	사원총회
-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 이상 찬성 의결	- 출석주주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함) -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 소집해 합병에 관한 사항 보고(이사회 공고로 같음 가능)	- 총사원 1/2 이상, 총사원 의결권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지체없이 사원총회 소집해 합병에 관한 사항 보고(이사회 공고로 같음 가능)	- 총사원의 찬성으로 의결

-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총회
 - 이사장은 조합원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법 제 92조, 제29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총회, 보고총회
 - 대표이사는 총회 개최 2주(소규모 회사의 경우 10일) 전까지 계약의 주요내용 또는 요점으로서 주주의 합병 찬반 결정에 필요한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소집 통지(상법 제363조, 제530조, 제374조 제2항)
 - 합병 반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상법 제522조의3 제1항)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상법 제434조)
 - 총주주의 동의를 있거나 소멸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100 이상을 존속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경우(상법 제527조의2), 이사회 승인결의로 대체 가능(상법 제526조의5)
 -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상법 제526조)
- (소멸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총회
 - 총사원의 반수 이상, 총사원의 의결권의 3/4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상법 제598조, 제585조)
- (소멸회사가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사원총회, 보고총회
 - 총사원의 찬성으로 의결(상법 제287조의41, 제230조)
 -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지체없이 사원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상법 제603조, 제526조)

⑤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소멸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 의결일로부터 14일 내에 대차대조표 작성	- 총회 2주 전부터 합병일 이후 6개월까지 대차대조표 등 주요서류 본점 비치	- 총회 2주 전부터 합병일 이후 6개월까지 대차대조표 등 주요서류 본점 비치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30일 이상) 내에 신청하도록 공고			

- 대차대조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작성(즉, 총회 전/후로 작성하였더라도, 합병기일까지의 변동사항 추가 반영 필요)
-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내에 대차대조표 작성(총회 이전에도 작성 가능)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내에 신청하도록 공고
 - 이의신청이 있으면 합병 예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단, 이의신청이 없으면 합병 승인으로 봄) (법 제101조 제11항, 제53조, 제54조)
- (소멸회사)
 - 소멸회사의 총회 의결일로부터 2주 전까지 대차대조표 작성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내에 신청하도록 공고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단, 이의신청이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봄) (상법 제527조의5, 제603조, 제287조의41, 제232조)

⑥ 인가신청(법 제101조 제7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흡수합병인가 신청

⑦ 합병인가 여부 통지(법 제101조 제8~10항, 시행령 제28조)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활용) 발급
- 60일 이내에 수리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연장 또는 재연장 기간 포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봄

⑧ 변경·해산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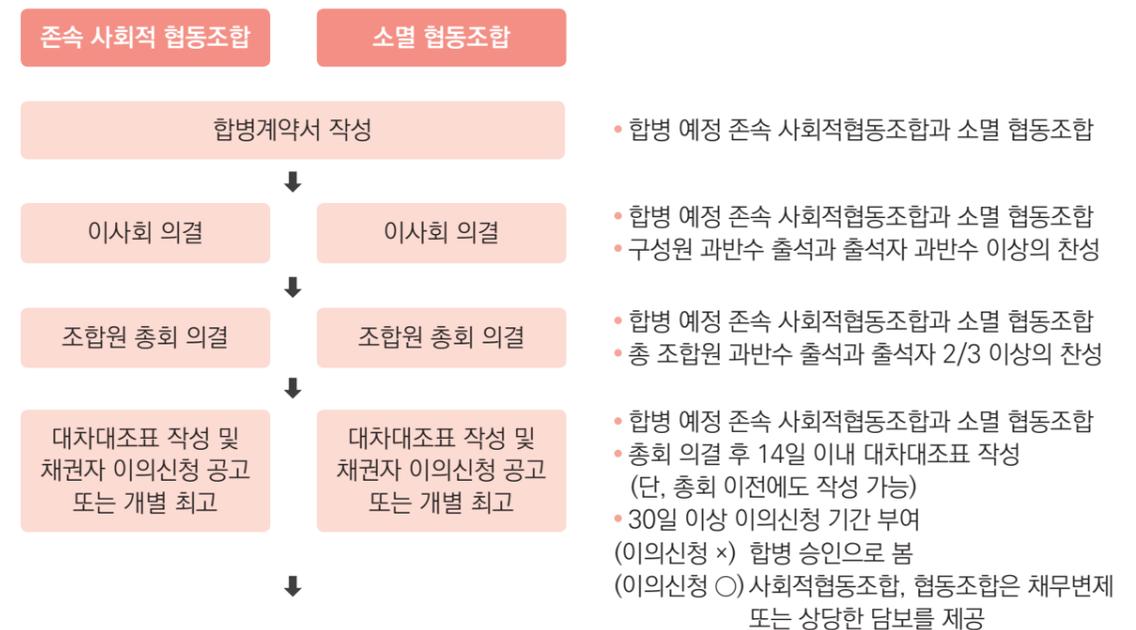
유형	등기의 종류	등기기한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변경등기	인가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멸하는 회사	해산등기	(주식회사, 유한회사) - 보고총회 종료 후, 본점소재지 2주, 지점소재지 3주 이내 (유한책임회사) - 합병 후 지점소재지에 2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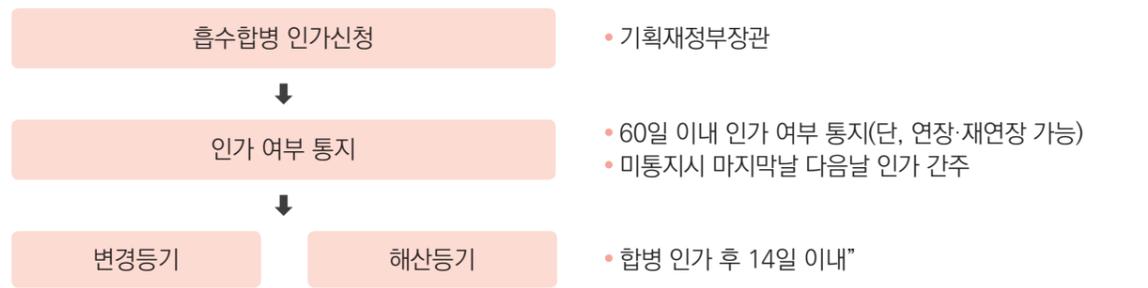
-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변경등기
 -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 소재지에 변경등기(법 제107조)
- (소멸법인) 해산등기
 - (주식회사, 유한회사) 보고총회 종료 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 해산등기(상법 제528조, 제602조)
 - (유한책임회사) 합병 후 2주내 지점소재지에 해산등기(상법 제287조의41, 제233조)

⑨ 사업자등록

유형	사업자등록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정정
소멸하는 회사	폐업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흡수합병 절차





- ① 합병계약서 작성(법 제101조 제1항)
 - 합병당사자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간의 합병계약의 주된 내용 기재
- ② 이사회 의결(법 제92조, 제33조 제2호)
 - 합병 예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각각 1) 합병계약서의 승인 및 2) 조합원 총회의 소집과 총회 의안(합병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 ③ 조합원 총회(법 제92조, 제29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 합병 예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각 조합원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각 합병 예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법 제101조 제11항, 제53조 및 제54조)
 - 각 합병 예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각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단, 총회 이전에도 작성 가능)
 - 대차대조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작성(즉, 총회 전/후로 작성하였더라도, 합병기일까지의 변동사항 추가 반영 필요)
 - 각 합병 예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일정기간(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i) 공고하거나 ii)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
 - 이의신청이 있으면 각 합병 예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단, 이의신청이 없으면 합병 승인으로 봄)
- ⑤ 인가 신청(법 제101조 제7항, 시행규칙 제21조)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병인가 신청

- ⑥ 합병인가 여부 통지(법 제101조 제8~10항, 시행령 제28조)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활용) 발급
 - 60일 이내에 수리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연장 또는 재연장 기간 포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봄

- ⑦ 합병등기(법 제107조, 제109조)
 -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 소재지에 변경등기
 - (소멸하는 협동조합)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 소재지에 해산등기(법 제107조)

협동조합 유형	등기의 종류	등기기한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변경등기	합병인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소멸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해산등기	합병인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⑧ 사업자등록

협동조합 유형	사업자등록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정정
소멸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폐업신고

타법인 흡수합병 인가서류 및 인가기준

-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첨부서류

구분	신청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명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약력 포함) 1부
5	흡수합병 후의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
6	흡수합병 후의 수입·지출예산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1부
7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흡수합병되는 법인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주주(사원)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시행령 제28조 제1항)

구분	흡수합병 인가 기준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①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해야 함(법 제5조)
 - 업무 수행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하고, 자발적 결성·공동소유·민주적 운영을 준수하며, 투기나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면 안 됨(법 제6조)
- ②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기본법, 흡수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는 상법, 흡수되는 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됨
 - 소멸법인과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법 제101조 제11항 및 제53조, 제54조 및 상법)
- ③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이므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정리
 - 사회적협동조합은 상장이 불가능하므로 주식회사 중 상장법인은 상장폐지 절차를 사전에 진행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 되므로 필요시 주식양도계약, 교부금 합병 등을 통해 지분 정리
 - 사회적협동조합은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자사주 소각 또는 처분
 - 사회적협동조합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를 사전에 상환하여 질권 소멸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상환 완료

다 분할

분할 관련 법령

- 법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 ⑩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 시행규칙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 인가)**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분할계약서 사본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6. 분할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7. 분할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분할의 정의 및 유형,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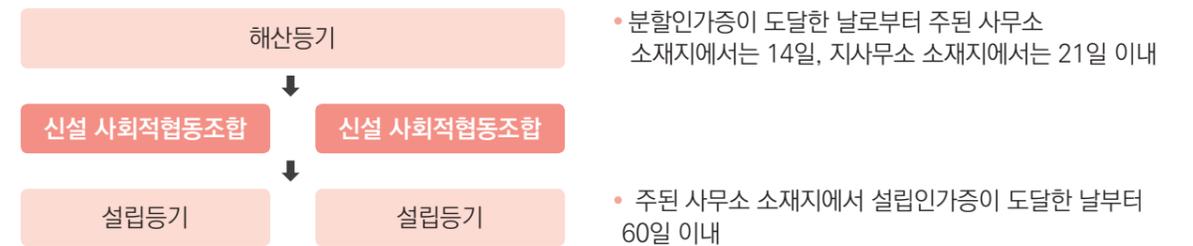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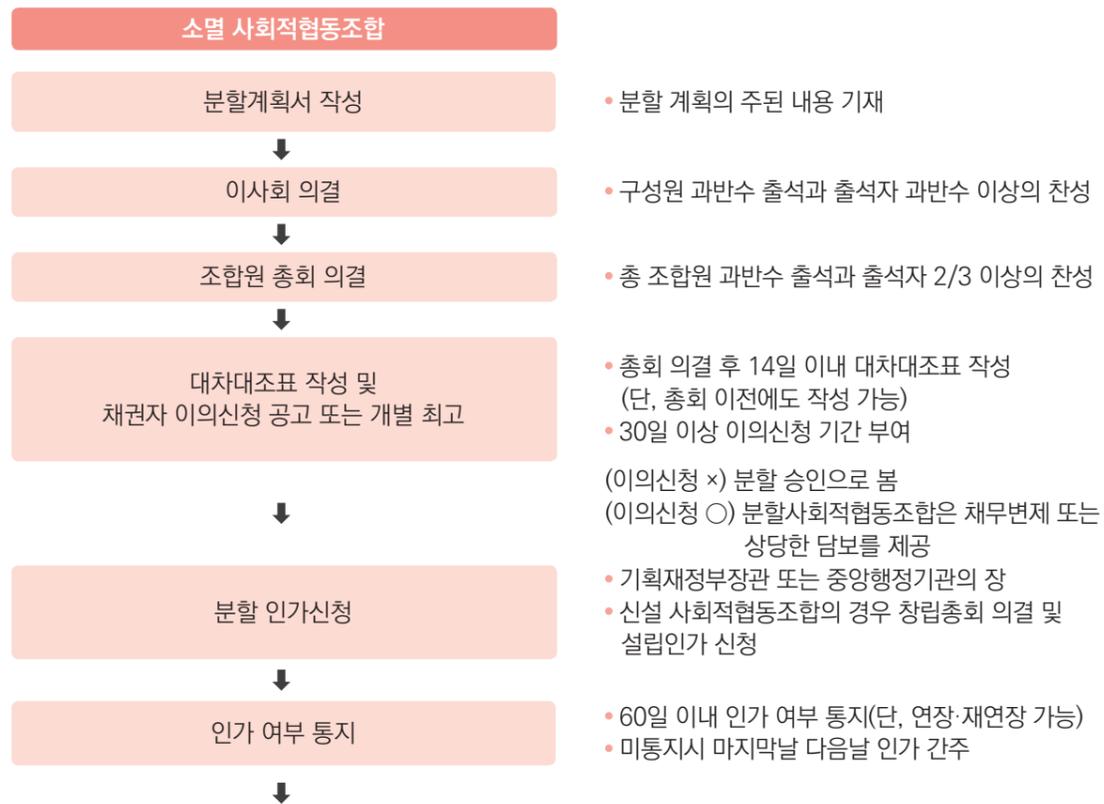
- “분할”이란 한 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둘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절차
 - “소멸분할”이란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멸하면서 2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신설해 기존 사회적협동조합을 승계하는 것(A=B+C)
 - “존속분할”이란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해 1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신설해 기존 사회적협동조합을 승계하고, 기존 사회적협동조합은 나머지 영업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A=A+A')
- 분할 후 신설·존속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분할 전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포괄승계(법 제101조 제3항)

분할 관련 유의사항

- 분할로 인한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은 분할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별도의 절차 없이 승계(법 제101조 제3항)함(단,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는 분할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름)
-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분할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은 조합원 및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 조합재산과 영업 등이 함께 분할되는 것이 원칙임
 - 조합원 및 조합원의 출자금의 분할 없이 조합재산과 영업 등만 분할되는 형태의 물적분할은 할 수 없음
-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로 신설·존속되는 협동조합 역시 사회적협동조합이어야 함(즉, 분할의 결과 일반 협동조합이 신설·존속될 수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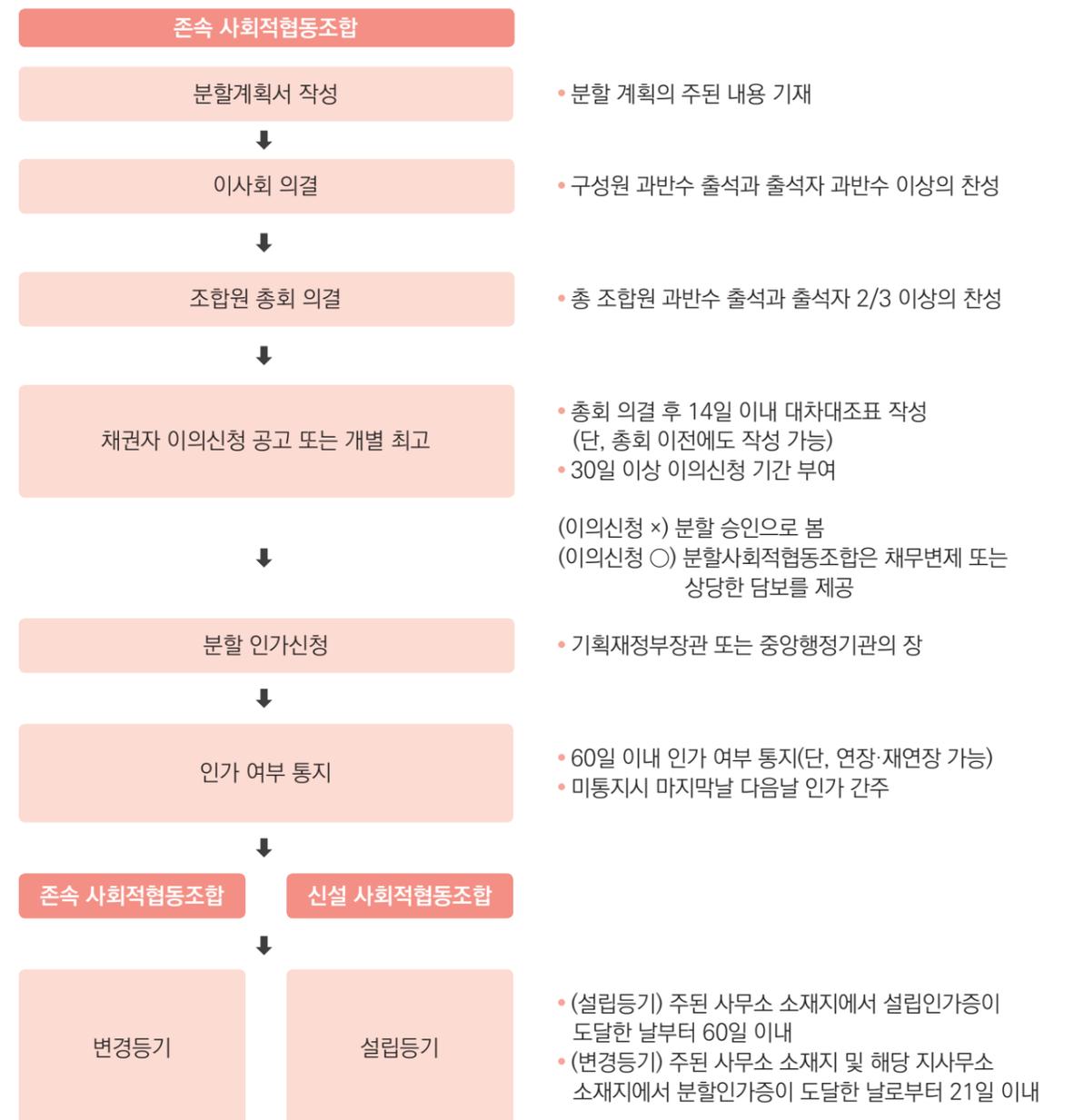
소멸분할

- 소멸분할 절차



존속분할

- 존속분할 절차



① 분할 계획서 작성(법 제101조 제1항)

- 분할 계획의 주된 내용 기재

② 이사회 의결(법 제92조, 제33조 제2호)

- 작성된 분할계획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함
- 조합원 총회의 소집 및 총회 의안(분할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③ 조합원 총회(법 제92조, 법 제29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법 제101조 제11항, 제53조, 제54조)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단, 총회 이전에도 작성 가능)
- 대차대조표는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작성(즉, 총회 전/후로 작성하였더라도, 분할기일까지의 변동사항 추가 반영 필요)
- 분할 사회적협동조합은 각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일정기간(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i) 공고하거나 ii)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
- 이의신청이 있으면 분할 사회적협동조합은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단, 이의신청이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봄)

⑤ 인가신청(법 제101조 제2항,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할인가 신청

협동조합 유형	신고의 종류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분할인가
소멸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⑥ 인가 여부 통지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분할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활용) 발급

- 60일 이내에 수리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연장 또는 재연장 기간 포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봄

⑦ 해산등기(법 제108조), 변경등기(법 제 110조, 제64조), 설립등기(법 제106조, 제109조)

- (소멸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분할인가증이 도달한 날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 지사무소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해산등기
-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분할인가증이 도달한 날로부터 21일 이내 변경등기
-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이 도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설립등기

협동조합 유형	등기의 종류	등기기한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변경등기	분할인가증 도달한 날로부터 21일 이내
소멸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해산등기	분할인가증 도달한 날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14일, 지사무소 소재지 21일 이내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설립인가증이 도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사업자등록

협동조합 유형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정정
소멸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폐업신고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신청

분할 인가 서류

- 분할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구분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분할계획서 사본 1부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5	임원명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약력 포함) 1부
6	분할 후의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
7	분할 후의 수입·지출예산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1부
8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9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산 및 청산

해산 및 청산 관련 법령

법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법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시행규칙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산 및 청산 관련 법령

법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법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법 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법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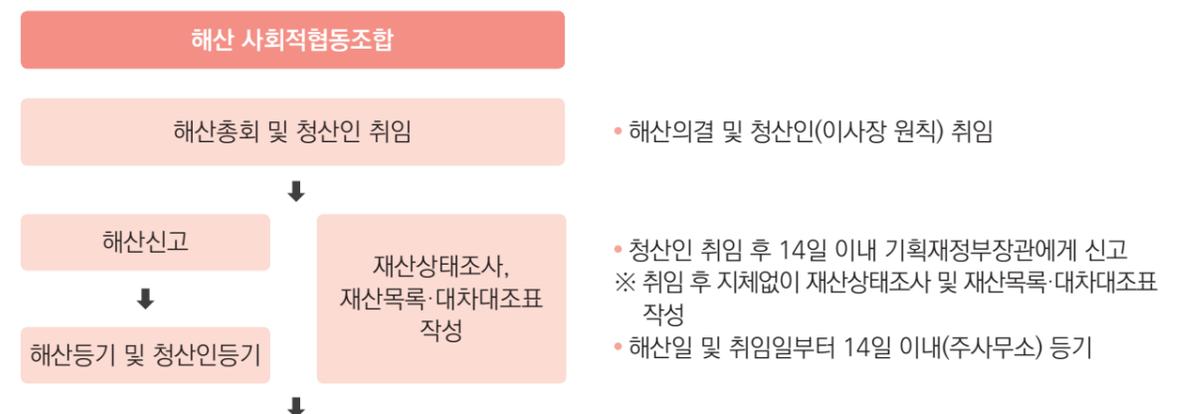
해산 및 청산

- “해산”이란 존속할 이유를 잃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즉, 해산의결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
- “청산”이란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없애는 절차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함(법 제103조 제5항)

해산 사유(법 제102조 제1항)

-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 발생
-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합병·분할 또는 파산
- 설립인가 취소

해산 절차





①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및 청산인 취임(법 제103조)

- 총회에서 해산이 의결되면 이사장이 청산인이 됨(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
-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태 조사 및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등 청산사무 개시

② 해산신고(법 제102조 제2항, 시행규칙 제22조)

- 청산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산신고
- ※ 해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작성 및 다음 서류 첨부

구분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총회 의사록 사본

-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는 해산신고서를 받은 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미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외)
-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www.share.go.kr) 'e하나로민원'에서 확인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사무에 대한 권한을 얻은 후 이용 가능

③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법 제108조, 제110조)

- (해산등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등기
- (청산인등기)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
- ※ 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위 2가지 등기를 동시에 진행

④ 재산처분 방법에 관한 총회 승인(법 제103조 제2항)

- 청산인이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을 마치면,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총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

⑤ 잔여재산 처리(법 제104조)

-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귀속
- ※ ①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②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 ③ 비영리법인·공익법인
- ④ 국고

⑥ 청산사무 종결 및 결산보고서 총회 승인(법 제103조 제3항)

-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총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

⑦ 청산종결등기(법 제110조)

-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는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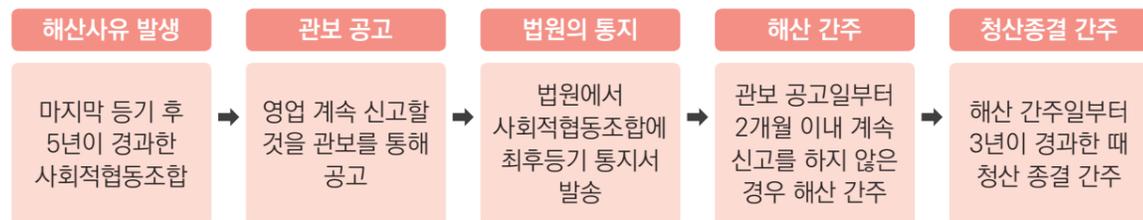
마 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간주

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준용

- 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본다.

법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간주 절차



※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계속 등기할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음

① 해산사유 발생

-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휴면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간주되어 해산사유 발생

②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 법원행정처장은 휴면 사회적협동조합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영업계속신고)를 할 것을 관보를 통해 공고

- 이 경우 신고의 내용·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의 통지

- 법원(등기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최후 등기 통지서’ 발송
 - * 최후등기 통지서란 최후 등기를 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법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 처리하기 전, 법인의 이해관계자(법인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송한 통지서

④ 해산 간주

-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상업등기법 제73조)

법 제66조의2(계속등기) 준용

법 제66조의2(계속등기) ①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속 등기한 경우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⑤ 청산종결 간주

- 해산 간주된 사회적협동조합이 3년 내 계속 하지 않은 경우 해산간주일로부터 3년 경과한 때 청산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 등기

참고 | 해산과 청산 관련 준용사항

• (민법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조항 준용

「민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79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
제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가 있고 의무 부담
제87조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 가능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제88조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함
제89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함
제90조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함
제91조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가능 ②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인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청구 가능
제93조	①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신청하고 이를 공고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 종료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받은 자

바 조직변경

조직변경 관련 법령

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4.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5.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6.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7.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8.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9.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기획재정부장관이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법 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30조(조직변경의 인가) ①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제105조의2제9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시행규칙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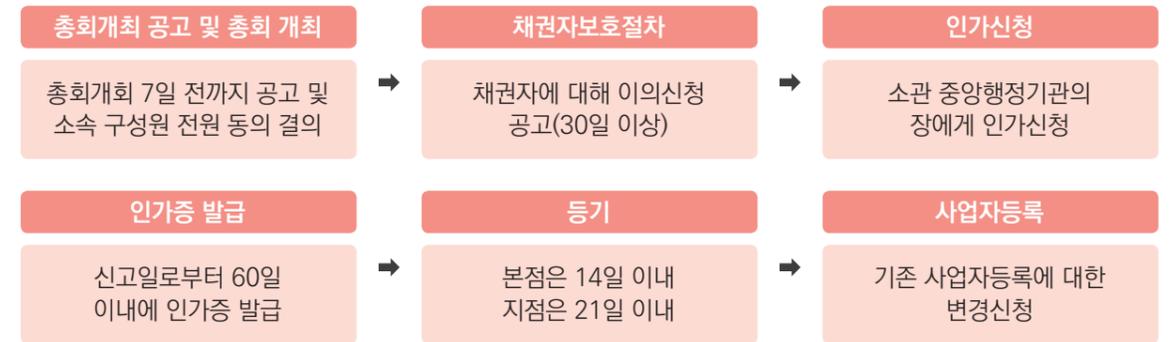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직변경 개요

- “조직변경”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법인이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되는 것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i)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ii)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iii)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iv) 법인등(「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법 제105조의2 제1항)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비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규정하였던 부칙 규정의 기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위 전환 대상이 아님

조직변경 절차



① 총회개최 7일 전까지 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 개최

-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
- ※ 다만, i)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ii)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은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조직변경 가능
-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함(법 제105조의2제6항)
-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관, 출자금,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구분	조직변경 시 결의사항
정관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출자금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자본)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함
그 외	사내유보금의 정리, 사채상환 완료 등

- (지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인 경우,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지분의 정리 필요

지분정리가 필요한 경우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지분정리방법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76조	주식양도계약
자사주 보유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사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자기주식처분 주주배분, 소각
질권 설정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3항, 제76조	피담보채무 상환

- (사내유보금)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배당 등으로 사회에 유출되지 않고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은 총회의 결의(일반정족수로 의결)를 통하여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의 적립금으로 할 수 있음(법 제105조의2 제5항)
- (사채상환)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상환 완료

②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에 제출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함

* 최고(催告)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함

※ 채권자 보호절차에 대하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3(준용규정)에 따라 상법 제287조의44 및 제232조를 준용

③ ‘조직변경인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④ 조직변경인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직변경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발급

- 이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인가를 한 것으로 봄(법 제105조의2제9항,10항)

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조직변경 전의 기존 법인) 및 설립등기(조직변경 후의 사회적협동조합)

※ 조직변경 관련 해산등기의 경우 청산종결등기는 필요 없으며, 해산등기와 동시에 등기기록 폐쇄

⑥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며,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를 함께 제출

※ 조직변경인가신청서 첨부서류

구분	조직변경인가신청서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임원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별지 제19호 서식)
6	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20호서식)
7	조합원 명부(별지 제6호서식)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등)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조직변경의 효과

- 기존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법인으로 간주(법 제105조의2 제1항)
 - 기존 법인의 근로관계, 사회적기업인증, 사업실적 등은 그대로 인정
- 인·허가의 경우 그대로 인정되지 않음
 - 기존 취득 인·허가의 인정 여부는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달리 판단되며,
 -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그 인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105조의2 제6항)

※ 인허가 승계의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의 취지는 기존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1항 후단에서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 법인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 법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기존 법인이 법령상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던 사실이나 그로 인해 해당 인허가를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까지 그대로 승계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보건복지부 안건번호19-0167)

조직변경 관련 사항

- 기존 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조직변경 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할 수 없음(법 제105조의2 제4항)
-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10호와 관련하여 법 제105조의3 및 상법 제287조의44, 제232조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 기존 법인이 사채를 발행한 경우 조직변경에 관한 총회의 결의 전에 사채를 모두 상환해야 함(법 제105조의3 및 상법 제287조의44(준용규정), 제604조제1항)
- 법 제85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최소기준 및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인허가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조직변경을 인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법인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직변경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

08 등기

가 설립등기

법 제106조(설립등기)

-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사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 설립등기
-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이사장은 이사로도 등기하여야 함

- 설립등기 시 필요서류(간인 날인 필요)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설립등기신청서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2	정관	원본 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3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 제출

4	설립인가증	
5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 제출 -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6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7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9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서류

구분	신청서류
1	설립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2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본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에 따라 이익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법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준용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
 - 지사무소 등기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통합등기 가능
- 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등기신청서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설치 연월일 기재
2	이사회의사록	공증 받은 의사록 제출필요 의사록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기재
3	등기신청수수료	
4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주사무소와 지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의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첨부
5	위임장	대표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이전등기

법 제63조(이전등기) 준용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사장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하나, 구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으로도 가능
- 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변경등기신청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 비치
2	정관	정관 사본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하여 제출
3	이사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4	조합원총회의사록, 정관변경인가확인증	정관에 주사무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경우
5	등기신청수수료	
6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신소재지 시군구에 대한 확인서와 구소재지의 시군구에 대한 확인서를 각각 제출
7	위임장	대표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라 변경등기

법 제64조(변경등기) 준용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익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에 따른 등기사항

변경등기대상	등기기한	신청인	비고
정관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이사장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출자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	"

•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 첨부 서류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정관	원본 제출 또는 원본 지참하여 사본 제출
2	총회 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 제출
3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4	위임장	이사장 아닌 대리인 신청시
5	- 채권자에게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 사임: 사임서, 사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 취임: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변경시
7	이사장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이사장변경시
8	- 출자금 및 출자좌수 변동내역 확인서(및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등) - 출자감소에 따른 변경시에는 출자감소 의결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를 경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자좌수, 출자금 총액변경시

마 합병등기

법 제107조(합병등기)

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 합병인가를 받은 날(설립을 인가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 합병 주체별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사항

구분	등기사항	비고
1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변경등기	
2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해산등기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첨부
3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설립등기	

바 해산등기

법 제108조(해산등기)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 촉탁(대등한 지위의 행정청간에 행하여지는 위임)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2	해산결의총회 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 제출

사 계속등기

법 제66조의2(계속등기) 준용

제66조의2(계속등기) ①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으로 간주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함

아 청산인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청산인등기

법 제67조(청산인등기) 준용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법인인감을 등기
- 청산인이 해산을 결의한 내용의 조합원총회의사록(공증필요)과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위 조합원총회에서 선임된 경우 그 의사록이나 정관에 청산인으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 그 정관)를 첨부하여 신청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2	취임승낙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신고서	
5	인감대지	

청산종결등기

법 제68조(청산종결등기) 준용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2	조합원 총회 공고문	
3	청산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총회의사록	공증받은 원본 제출
4	청산결산보고서	출자금분배확인서, 출자금분배 내역서 첨부
5	채권자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 조직변경등기

법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조직변경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또는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등기
-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
 -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함(상업등기법 제66조)
 - (조직변경 후의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 변경 전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하며,
 -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상업등기법 제65조)
- ※ 협동조합기본법 제110조 및 제70조는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설립등기 시 기존 법인의 업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법인의 말소등기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소명
- 신규등기번호를 부여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정정(변경)신청
 -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를 함께 제출

등기의 기산일

-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 계산(법 제109조)

참고 1 | 등기 관련 준용사항

-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 준용

사회적협동조합 등기 관련 준용사항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62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등기
제65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을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24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제24조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의 경우 증명서면 첨부
제25조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

참고 2 | 등기 관련 내용정리

구분	관련조항	관할 등기소	등기기한	신청인
설립	제106조	주사무소 소재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사장
지사사무소 설치	제62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21일 지사사무소 28일	이사장
이전	제63조	전·현소재지	전·현 소재지 각각 21일	이사장
변경	제64조①	각 사무소 소재지	각각 21일	이사장
출자금 변경	제64조②	각 사무소 소재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사장
합병	제107조	각 사무소의 소재지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사장
해산	제108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14일 지사사무소 21일	청산인
계속	제66조의2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14일 지사사무소 21일	이사장
청산인	제67조	주사무소	취임일부터 14일	청산인
청산종결	제68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14일 지사사무소 21일	청산인
조직변경	제108조의2	본점 및 지점 소재지	조직변경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14일, 지점 21일	이사장

09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가 감독

법 제111조(감독)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수가 제8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제9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법 제111조제1항)

-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 포함)이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음(법 제111조제2항)

감독사유(법 제111조제2항)

-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본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5인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한 주사업
 - 법 제45조의 필수 사업(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②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사 등 요구 및 시정조치 명령

-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음

감독방법

- ① 감독대상 선정 및 감독계획 수립
 - 감독개요, 감독대상, 감독시기, 감독방법, 감독사항, 감독점검표 서식, 감독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 감독조치계획, 행정사항 등 기재
- ② 감독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에 통보
 - 감독시행일 7일 전까지 공문이 도달되도록 하여, 피감독자가 미리 감독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③ 감독시행
 - 감독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관계인에게 제시
 - '감독점검표'에 감독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적고, 하단에 피감독자의 확인서명을 받음

④ 감독결과보고서 작성

-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소관부처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⑤ 결과조치

- 시정명령, 경고
-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 등도 가능

감독기관에 대하여 거짓 진술·보고, 사실은폐 또는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칙 참고

나 설립인가 취소

설립인가 취소 관련 법령

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설립인가 취소 사유

구분	취소사유
재량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회 이상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85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인가 취소 절차

① 시정조치

- 설립인가 취소가 재량사항인 경우(사업미개시, 설립인가기준 미달)에는 일정기간을 주어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설립인가 취소 절차 진행

② 청문실시

-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
-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
-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
-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
- 청문 주재자는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설명,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 결과 반영

- ③ 설립인가 취소(서면으로 통보)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

참고 1 | 감독 결과보고서 양식

※ 감독대상 협동조합이 여러 개인 경우 협동조합별로 작성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결과 보고서

구분		주요 내용				
협동조합 현황	협동조합명			인가일	예) '13. 7. 1	
	이사장 성명	조합원 수	명	총출자금액	원	
	법인 소재지					
	주요사업	예) 협동조합의 주요사업 사업 기재				
감독 개요	감독사유	예) 사업미개시, 주사업 인가기준 미달 등				
	감독일시	예) '15.7.1(수) 14:00	감독방법	예)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		
	감독자	예) 000부 홍길동 사무관, 사회적기업진흥원 김길동 대리 등				
	피감독자	예) 000사회적협동조합 이길동 이사장 등				
감독 사항	설립	법인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운영	주사업 등 설립인가 기준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 미충족시 미충족 내역 및 사유 기재			
		인가 후 1년 이내 주사업 수행 여부	[]수행 []미수행 ※ 미수행시 미수행 사유 기재			
		1년 이상 사업 미수행 여부	[]수행 []미수행 ※ 미수행시 미수행 사유 기재			
기타	기타사항 위반 여부	[]적정 []부적정 ※ 부적정시 부적정 내역 및 사유 기재				
감독 결과	결과 및 조치계획	예) 감독결과 법령 위반 사항,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및 향후 계획 등을 기재				

참고 2 | 관리 감독 일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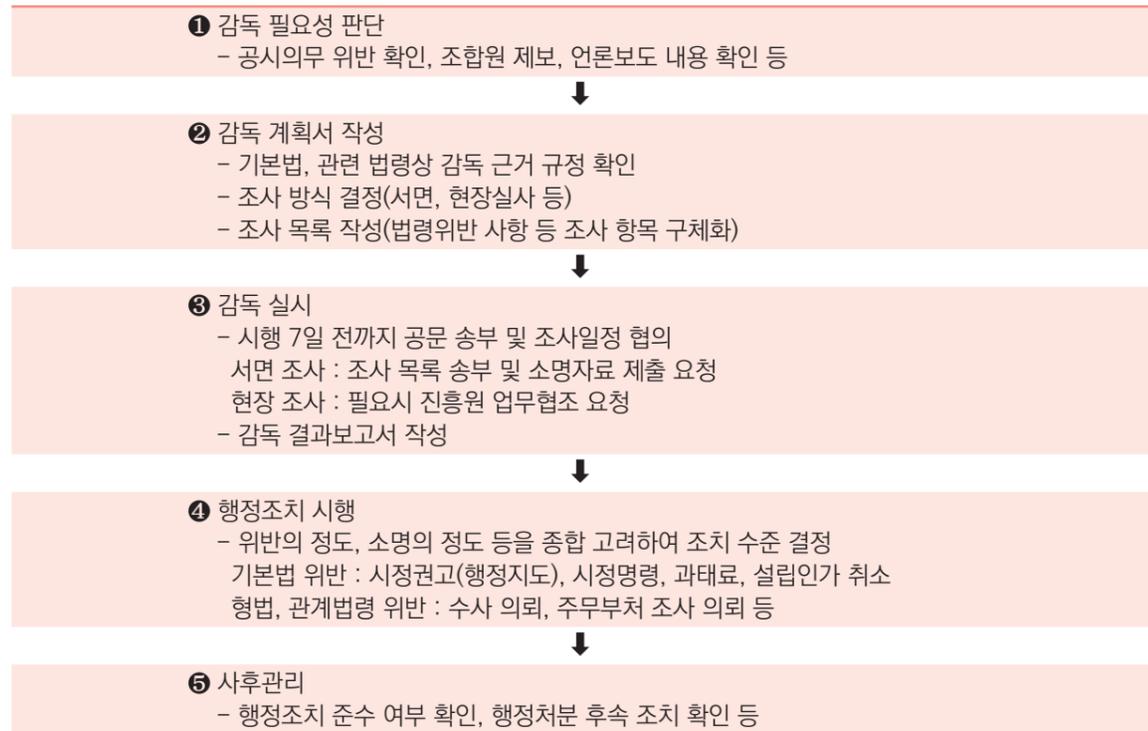
계획 수립

- 근거 : 기본법 제70조의2(감독), 제111조(감독),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제115조의13(준용규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7조(벌칙), 제119조(과태료) 등
- 1차 조사(서면) : 감독 대상 조합 등에 대해 서면조사 실시
- 2차 조사(현장실사) : 서면 소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경우 실시

감독 시행

- 공문 시달(감독 시행일 7일 전까지)
- 감독 실시(감독 점검표 및 진술서 등)
- 감독 결과보고서 작성
- 조치결과 : 시정명령, 과태료, 설립인가 취소, 수사의뢰 등
- ☞ 일반 절차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공통으로 적용
- ☞ 협동조합의 종류, 조사방식, 행정조치 내용에 따라 세부 내용 변경 가능

업무 추진 절차



1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21.1.1.시행, '20.2.11. 개정)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바. (일부생략)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일부생략)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나)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4항)
- (대상)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취약계층 고용형’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음
- (지정기부금의 범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함.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됨(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추천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바목)

구분	추천요건
1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구분	추천요건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 관리·감독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것

※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2·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①의 요건 적용 배제

추천신청서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21.1.1.시행)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 신청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	
2	법인설립허가서(설립인가증) 사본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정관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설립 후 3년이 안된 경우)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제출)	
7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 동안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8	법인대표자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서식)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만 제출
9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만 제출

추천방법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위의 추천신청서류를 국세청장(주소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에게 제출

- ② 국세청장은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기부금단체 추천서(별지 제63호의2서식)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 추천기한 : 1.31 / 4.30 / 7.31 / 10.31

**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제출(예외 불인정)

지정기간

- ①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3년간

- 다만 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 ② 기부자 손비인정(2020.8월 현재)

-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의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

-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사회적협동조합(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5항 및 제6항)의 의무사항

구분	의무사항
1	정관의 주사업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할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주사업을 수행할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 관리·감독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회적협동조합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이 경우,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5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6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구분	의무사항
7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 ① 지정 후 매년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함(법인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2)
- ②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 ③ ②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④ 관할세무서장이 ③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⑤ ②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국세청장의 사후관리업무

- 보고기한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해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점검결과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기부금 제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할 것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5항 각호의 추천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지정

- 신청절차
 - 신규신청 절차와 동일(공문에 '재신청' 표기)
- 재지정 배제사유
 - 지정기간 종료 후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

구분	재지정 배제사유
1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경우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
6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5항각호의 추천 요건을 위반한 경우
7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서류
1. 소관부처 추천 공문
 2. 소관부처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지정 추천 의뢰서(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조문 포함)
 3. 설립인가증 사본
 4. 정관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기타 참고자료

- 법무부는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를 개정하여 대상기관을 추가 고시함
-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으로 인정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공증된 의사록 대신 법무부 고시를 제출

참고 |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참고 서식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협동조합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제1사업장			
		제2사업장			
출자 자본금		백만원			
주사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업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사회서비스형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고용형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업협 <input type="checkbox"/> 기타공익증진형				

사업의 공익성	※ 사업의 공익성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기재
------------	----------------------------

위와 같이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00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의 공익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	----------------------

※ 공증면제 신청과 관련한 법정 서식은 없으며, 위의 서식은 참고서식